

# “건설경기 어렵다고 하도급업체 힘들게 해선 안돼!”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실태조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모두 범위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적발,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확인된 범위반 유형으로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수수료 미지급 △선금금 지급 위반 △지급보증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되어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인하 수단을 동원한 바 있고, 자기 회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됨으로써 나쁜 관행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편집자 주]

최근의 어려운 건설경기를 이유로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주기적으로 지급하던 공사대금을 늦게 주기 위해 기성고 검사를 지연시키거나,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 및 강매, 철강재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가격협상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의 불공정거래는 결국 하도급업체에 더 큰 피해로 직결된다”고 판단, 이에 대한 근절과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체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개 업체) △선금금 지연지급(4개 업체) △현금결제 비율 미유지(4개 업체) △어음할인료 미지급(8

개 업체)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4개 업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12개 업체) △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12개 업체) △서면 지연교부(2개 업체) 등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지급명령, 시정 명령 등을 조치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대·중 소기업간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격 후려치기(반복적인 재입찰을 통한 저가하도급 결정)’, 특히 등 핵심기술자료는 물론 원가계산서까지 요구하는 행위 등이 만연해 거래 상도의를 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구태는 올바른 거래문화 정착 차원에서 속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건설업체



들도 정부개입에 따른 수동적 시정에서 탈피해 보다 능동적인 개선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원·하도급간에 윈-윈 기반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관계가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 공정위가 적발한 20개 건설업체 범위반 유형

(단위 : 백만원, 개)

| 구 분       | 계     | 부당한 대금결정 | 하도급대금·지연이자 | 어음 할인료 | 어음대체 수수료 | 선금금 지급 등 | 기타  |
|-----------|-------|----------|------------|--------|----------|----------|-----|
| 범위반 업체수   | -     | 6        | 11         | 9      | 4        | 5        | 17  |
| 범위반 금액    | 5,072 | 642      | 748        | 2,341  | 1,136    | 116      | 32  |
| 관련 수급사업자수 | 1,505 | 55       | 136        | 440    | 231      | 67       | 576 |

## 주요 하도급법 위반 사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업체      | 위반사례  | 관련법 내용   |
|---------|---|--|
| △△건설(주) | 5개 하도급업체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건설 위탁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입찰한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입찰을 실시하여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br>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
| ☆☆건업    | 3개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공사비 항목(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이하로 하도급대금 결정   |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br>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 업체           | 위반사례                                   | 관련법 내용   |
|--------------|--|--|
| □□건설 등 8개 업체 |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382개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음 | 하도급법 제13조의2<br>건설공사를 위탁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 주도록 규정 |

□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 업체              | 위반사례   | 관련법 내용   |
|-----------------|--|--|
| □□개발            | 5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고도 하도급대금(89백만원) 미지급                    | 제13조 제1항·제8항<br>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 후 60일(법정지급기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 날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5%)를 지급하도록 규정 |
| ☆☆토건 등 8개 업체    |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 미지급   |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br>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만료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연 7.5%)를 부담하도록 규정                  |
| ◎◎기업 등 4개 업체    | 231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br>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연 7%)를 지급하도록 규정                    |
| ☆☆건설산업 등 12개 업체 | 189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851백만원 미지급 | 제13조 제1항·제8항<br>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 후 60일(법정지급기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 날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5%)를 지급하도록 규정 |
| ▽▽종합건설 등 3개 업체  |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125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br>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                                       |

□ 선금금 지연지급 등

| 업체           | 위반사례  | 관련법 내용  |
|--------------|---|---|
| △△건설 등 4개 업체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수령하고도 59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해당 선금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71백만원 미지급           | 하도급법 제6조<br>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금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 |
| ◇◇건설         |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수령하고도 해당 선금금을 8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 45백만원 미지급 |   |



□ 설계변경·물가변동 지연조정 등

| 업체   | 위반사례  | 관련법 내용   |
|------|---|--|
| ○○산업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조정받고도 그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44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 조정계약을 28~261일 지연하여 체결 | <b>하도급법 제16조</b><br>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도록 규정 |

□ 서면 지연교부

| 업체   | 위반사례  | 관련법 내용   |
|------|---|--|
| ○○건설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시설물을 5개 관련 하도급업체에게 제조위탁하면서 관련 하도급업체들이 작업을 착수한 이후에 서면을 지연 발급 | <b>하도급법 제3조</b><br>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하도급업체가 사전(작업착수 전)에 교부해 주도록 규정 |



무한지식

인체의 생존 전략, 열순응

여름철 야외 수영장에 가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묘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준비운동을 했는데도 수영장 물에 처음 몸을 담그면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치거나 몸이 오그라들 정도로 차가운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조금만 있으면 물이 차갑다는 것도, 춥다는 것도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다른 경우도 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열탕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앉아 있을 엄두가 안 나지만, 조금만 있으면 견딜만 해지면서 몸을 꼭 담그고 느긋하게 노래까지 흥얼거리게 된다.

이처럼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이 적응하는 것은 인체가 가진 특유의 생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저런 반응을 일으킨다. 더운 곳에 가면 땀을 많이 배출해서 열기를 식히고 추운 곳에서는 몸을 떨어서 열을 내는 것이 그런 반응의 일종이다.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 '열 순응(heat acclimation)' 이라고 한다.

하지만 열 순응에도 한계가 있다. 웬만큼 덥거나 추워야지 그 이상을 넘어가면 견딜 수가 없다. 이왕이면 천하무적이

되는 것이 좋을텐데 왜 그럴까? 그 이유 역시 생존을 위해서다. 만약 열 순응에 한계가 없다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워도 뜨거운 줄 모르고, 동상에 걸릴 정도로 추워도 추운 줄을 모를 테니까 말이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일이다.

한국체대 오재근 교수에 따르면, 열 순응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무더운 날씨에 처음 노출되거나 더운 여름날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열 탈진(heat exhaustion)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 운동을 할 때 과도하게 땀을 흘리거나 이로 인해 순환계 적응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발생하게 되는데, 두통과 현기증, 구역질 등을 동반한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날씨가 더워질 때 실내에서 운동을 할 경우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잘 시키고 습도와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집중적인 훈련을 피해야 한다. 또 자주 휴식을 취하면서 수분을 적절하게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라는 과학자는 생명체를 '생존기계(survival machine)' 라고 표현했다. 그 의미가 좀 다르긴 해도 이렇듯 치밀하게 생존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 인체의 비밀을 엿보면 생존기계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정재승의 도전! 무한도전」 중에서